

진교면사무소(경남 하동군)의 신축부지 선정은 대단히 비상식적이며, 의혹투성이입니다.

하동군에서는 지금 진교면사무소 신축부지의 위치를 정하기위해 주민공람¹⁾을 마치고 23년 9월21일에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검토하는 시늉만 하던 2개의 안 중, 이미 내정되어있었던 대로 부당하기 짝이없는 안을 강행하려 하고있습니다.

이는 예산낭비와 시골사람 알보는, 일반민의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폭정으로서, 전임군수시절에 확정고시로 6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해둔 진교면청사부지가 있음에도 신임군수께서 꼭 옮겨야했다면, 비싼 사유지강제수용 대신, 연결된 군공용지(郡公用地)에 보건소 옆마당에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쓸데없이 사유지매입비도 들지않아 욕을 덜 먹을 것입니다.

지금 하동군이 사용자들의 민의를 아예 무시하고 밀어부치는 공람도면에 포함된 진교면사무소자리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폭로하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민원의 힘으로, 우매한 실정(失政)이 바로잡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점1. 많은 지역주민들의 뜻이 아예 무시되었습니다.

진교면청사 신축부지로, 지역주민 630명이 가장 편리하고 좋다는 장소는 現공람된 도면MasterPlan(대안①)이 아니라 하동군청 출처의 MasterPlan(대안②)에 있습니다./도면참조<첨부3>MasterPlan(대안①). <첨부4>MasterPlan(대안②)/ 이하 1안(案),2안(案)으로씀

하동군청 출처의 '진교면사무소위치에 관련된 여러 안(案)'들에 대해, 공조직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설문조사 등 민의를 수렴해 줄 것을 수차(민원과 신문고²⁾ 등) 청원하였습니다. 수차 제안했던 '민의수렴'도 전부 무시되었기에, 개인들이 며칠간 진교공설시장 인근에서 630명의 뜻을 모아 자필서명하여 하동군에 민원³⁾으로 알렸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동군에서는 2안(案)을 배제시키고 1안(案)만 공람공고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싫다고 정확히 특정까지 한 위치⁴⁾에 면청사 짓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2. 면사무소를 꼭 저 자리⁵⁾에 저렇게 지어야만 할 정당성이 있나요?

저곳이 아니면 면사무소를 못 짓기라도 하나요?

지역민의 안전에 위협이 오거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받나요?

풍수해나 천재지변 등 공공의 안전과 손해와도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하동군에서는 오랫동안 MasterPlan(대안①)과 MasterPlan(대안②)가 포함된 여러 가능한 안(案)을 놓고 공식적으로

1) 하동군청에서 검토하던 MasterPlan(대안①)과 MasterPlan(대안②)은 진교면청사 위치만 달라질 뿐 그 외 다른 조건은 같음
도면참조<첨부3>MasterPlan(대안①). <첨부4>MasterPlan(대안②)

2) <첨부5>신문고에 민의수렴을 제안함

3) <첨부6>23.5.25일 하동군에 제출한 문서(630명의 자필서명목록 포함.)

4) <첨부6>으로 제출된 자필서명서 상단에 표시된 주민의견

5) 공람공고된 도면으로 MasterPlan(대안①)임. <첨부2>과 같음

보건소 옆마당에 진교면사무소가 생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편이가 무시된, 폴마트 건너 대로변의 면청사는 절대반대합니다.

수차 검토해왔다는 점⁶⁾은 MasterPlan(대안②)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반증이 됩니다.

두 안(案)의 다른 점은, 진교면청사를 짓는 위치가 대로변에 있거나, 바로 뒤 공터로 옮겨가거나 해서 건물의 배치도가 달라질 뿐 그 외의 복합단지내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MasterPlan(대안①)/대로변'사유지'강제수용을 통한 고가의 부지매입비 필요(전임군수시절 확정고시로 기 매입부지 존재함)
*MasterPlan(대안②)/대로변'사유지'의 바로 뒤에 연결한, 보건소 옆 공터 하동군소유 공공용지로 부지매입비가 필요 없음.

문제점3. 진교중앙길 대로변에 지어진 면청사는 교통혼잡 등 주민안전에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現공람도면, 즉 MasterPlan(대안①)의 내용대로, 진교초입부터 중앙길 대로변을 가로막아 북향으로 면청사를 짓는다면 '교통혼잡'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길다란 면청사건축물⁷⁾의 뒷담에 '불법주차'문제, 대로변의 리어가 트럭 등의 상행위문제, 대로변에 상품을 늘어놓을 행상문제 또는 '대로변 무단횡단사고' 등이 쉽게 일어날 소지가 있어 주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생활편의상권이 사라져 공공복합시설과 문화시설의 이용자들은 필요물품 구매를 위해서는, 대로(진교중앙길)를 건너, 일부 품목만 진열된 길건너 풀마트(슈퍼마켓)로 가거나, 필요한 상품을 찾아 민다리길 이나 공설시장까지, 500m이상의 거리를 걸어가서 가게들을 찾을 수밖에 없어 동선이 길어지며 단지내 공공복합 시설과 문화시설, 시외버스터미널과의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이는, 주요시설들을 한곳에 집약, 동선을 줄여, 지역민들의 편의 도모를 표방했던 사업의 대전제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문제점4. 중앙대로변 상권이 몰수되고 편의시설의 자생(自生)이 원천차단됩니다

향후 문화행정복지복합타운 조성완료시 지역주민이 모여드는 복합공간으로서 생활편의 상권(예/병원,약국,쇼핑센터, 음식점 등) 등 적정 상업면적의 확보가 더 필요해집니다. 그러나 現공람도면과 같이 즉 MasterPlan(대안①)의 내용대로, 진교면청사가 들어선다면 공공청사의 뒷담이 중앙대로변을 막아버려 한쪽의 기존 길가상권은 몰수되며, 차후 생성되어야 할 필요상권의 자생(自生)이 원천봉쇄 되고 그 자리에 관공서가 버티고 선 활기 없는 회색도시로 변할 것입니다.

現공람도면에서 진교면청사부지의 수용예정지는 진교시외버스터미널과 하동군의 공용주차장, 보건소 등이 연결되어 있어 대로변상권의 목이 좋아 현재도 우수한 상업면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426-42번지는 대형복합상업시설 건축이 목전에 있으며, 426-43(진교중앙길8)은 붉은 벽돌과 유리로 많은 비용을 들여 건축한 55평의 근린2종 상가건물에, 상권의 목이 좋아 현재 수시로 큰 행사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6) <첨부7>해당일에 배포된 각 자료 중 관련도면(하동군청이 주최한 2022.10.22.진교면 주민설명회에서는 MasterPlan(대안②)로 설명되었다가, 2023.4.10.중간보고회의, 2023.4.24.미래도시자문단회의(13차) 등을 통해 소유인의 영향력으로 MasterPlan(대안①)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7) 도면참조<첨부8>MasterPlan(대안①)의 부분

문제점5. 관청에서 헛돈 쓴 예산낭비로, 전임군수시절에 확정고시, 매입해둔 진교면청사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공람도면의 비싼 수용지 대신, 연접된 군공용지(郡公用地)가 훨씬 나은 조건입니다.

하동군에서 최근까지 고려하던 MasterPlan(대안②)에 의하면, 면청사부지의 매입비 부담 없이 추가로 한푼도 더 들이지 않고, '사유지(진교리426-42,3)'의 바로 뒤로 연접해있는 하동군 소유의 공용지(公用地)에 진교면청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유지(진교리426-42,3)'를 강제수용하지않고는 불가능한 MasterPlan(대안①)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임군수시절인 2021년에 확정고시, 군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했던 상평교건너 인근에 진교면청사부지가 있음에도, 편의와 위치의 적절성을 재고하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가까운 곳으로 건축위치를 변경하겠다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그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진교면사무소의 부지매입비로 '헛돈 썼다', '분명히 야로가 있다'며 열 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비싼 대로변 '사유지'를 면사무소부지로 강제수용하느라 한 번 더 공연한 예산을 낭비한다면, 더군다나 대로변을 막아 북쪽으로 돌아왔은 거창한 면사무소건물을 짓게 된다면, 그 원성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매입된 면청사부지를 두고도 또다른 위치를 찾는 사업진행방식에 대해, 정치권의 변동에 따른 "전임군수의 그림자 지우기" 라는 비난이 사람들사이에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음이 지역의 현황입니다.

문제점6. 공람안(MasterPlan(대안①)의 면청사부지는 대로변의 우월한 사유지로서,
이를 개인에게서 강제로 뺏으려면 강한 저항과 큰 충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現공람안의 면청사부지는 진교의 중앙대로변과 시외버스터미널, 하동군 공용주차장에 접해있고 상권의 목이 좋아 대형행사가 자주 열리는 위치로서, 소유자2인과 현재의 상가세입자들은 공람도면에 절대반대하는 입장에서, 426-42번지의 경우, 대형복합상업시설 건축허가신청을 하동군에서 이유 없이 반려하며 시간끌다가 행정심판⁸⁾에서 패소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위법한 하동군의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426-43번지의 경우 유명작가의 대형조형물까지 안치된 아름다운 기존상가건물⁹⁾을 부수고 그 자리에 면청사를 돌려앉혀 짓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할까요?

문제점7. 굳이 MasterPlan(대안①)/공람안대로 면청사를 지으려는 이유를 추정하면,
대로변의 상권을 없앴을 때 엄청난 반사 이익이 생기는 소수인이 있습니다.

하동군에서는 왜 이러한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요? 많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면청사를 조금만 뒤로 물려 공용지에 지으면 자연스런 남향건물에 넓은 앞마당까지 갖춘 편안한 면사무소를, 부지의 추가 매입비 없이 지을 수 있을텐데 굳이 갖은 의혹을 받으면서 왜 길다란 북향건물로, 한 구역의 대로변 전부를 다 막으려 할까요?
전체의 도면¹⁰⁾을 보면 의외로 간단한 모양새가 드러나 보입니다.

8) 경남행심2023-377/진교리426-42번지 사건
9) 사진참조<첨부9>현근린상가 전면과 측면사진
10) <첨부10>MasterPlan(대안②)에 보충설명함.

이권 관련자를 ‘주민의 대표’라 칭하며 하동군의 주요 정책관련 위원이나 심의위원으로 곳곳에 얹혀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합니다.

객관적이거나 무관심한 소수 위원들의 함구 가운데 빅마우스들은 전 지역민들에게 공공연한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失政)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시킨다면, 이에 대해 현 하동군수는 신축된 면청사건물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쓴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문제점8. 가장 치열한 이의제기를 해왔던 지주가, 지주들을 대상으로 열린 2차 공청회의 참석을 유일하게 차단당했습니다.

9월5일의 1차 설명회는 전 지역민을 대상으로 공람공고 되었습니다.

민원인은 타지에서 70페이지가 넘는 이의신청서를 우송했고 1차 설명회당일에 직접 참석은 못했습니다.

며칠지난 9월15일에 ‘지주들 대상의 공청회 진행 일정’을 알고자 하동군청에 전화했더니 이미 ‘12일에 끝났다’했습니다.

모든 지주들에게 공청회 일정을 개별전화로 알려면서 제가 유일하게 제외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630명의 자필서명을 모아 이의신청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겐 왜 알리지않았냐?’는 물음에 ‘9월5일 주민설명회에 불참했기 때문에 지주들대상의 공청회에도 참석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화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답변입니다. 혹시 잊어버렸던거냐고 재차 물었으나 ‘인지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주들 공청회에 참석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피력할 수 있었던 기회를 원천봉쇄시킨 점에 대해서도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바랍니다.

2023. 9. 17 민원인 이종선 올림
연락처 010 3769 7710
hanbit7710@hanmail.net

***자필서명된 63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첨부목록

- 1.<첨부1>하동군공람공고2023-1149 우송받은 공람공고안내문 pdf파일7쪽)
- 2.<첨부2>-1.공람 사업부지의 도면(
 <첨부2>-2.공람도면상 진교면사무소 부지의 위치를 표시함)
- 3.<첨부3>MasterPlan(대안①)
- 4.<첨부4>MasterPlan(대안②)
- 3.<첨부5>MasterPlan(대안①)의 부분확대도면
- 5.<첨부6>MasterPlan(대안②)의 보충설명표시 도면
- 6.<첨부7>민의수렴을 제안함 5월 10일 신문고
- 7.<첨부8>하동군에 23.5.25. 제출한 민원(630명의 자필서명목록포함.)
- 8.<첨부9>해당일에 배포된 각 자료 중 관련도면
 하동군청이 주최한 2022.10.22/진교면 주민설명회에서는 MasterPlan(대안②)로 설명되었다가,
 2023.4.10./중간보고회의, 2023.4.24/미래도시자문단회의(13차) 등을 통해 소수인의 영향력으로
 MasterPlan(대안①)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9.<첨부10>수용예정 사유지상 현재의 근린상가 전면과 측면사진

하동군 공고 제2023 - 1149호

하동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하동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하동군 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8. 23.

하 동 군 수

1. 건명 : 하동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지정(안)

2. 주요내용

가. 하동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6	8	국지 도로	194	중로3-1호선	중로3-6호선	일반 도로	-	군고28호 11.06.30	
변경	소로	2	16	8	국지 도로	97	중로3-1호선	진교면 진교리 426-11	일반 도로	-	군고28호 11.06.30	노선 축소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251	중로3-5호선	소로2-16호선	일반 도로	-	군고28호 11.06.30	
변경	소로	2	17	8	국지 도로	251	중로3-5호선	소로2-16호선	일반 도로	-	군고28호 11.06.30	가각 축소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28	소로1-6호선	소로2-16호선	일반 도로	-	군고28호 11.06.30	
변경	소로	3	6	6	국지 도로	84	소로1-6호선	진교면 진교리 426-52	일반 도로	-	군고28호 11.06.30	노선 축소

주) 기정 : 하동군 고시 제2011-28호(2011.06.30.), 하동군 고시 제2014-62호(2014.08.07.), 하동군 고시 제2016-14호(2016.02.18.)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6호선	소로 2-16호선	◦ 노선축소 B=8m, L=194m → B=8m, L=97m(감97m)	◦ 진교면 행정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와 복지가 있는 문화행정복지복합타운 건설을 위해 광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정비
소로 2-17호선	소로 2-17호선	◦ 가각축소 → 폭원, 길이 변경 없음	◦ 진교면 행정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와 복지가 있는 문화행정복지복합타운 건설을 위해 광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정비
소로 3-6호선	소로 3-6호선	◦ 노선축소 B=6m, L=128m → B=6m, L=84m(감44m)	◦ 진교면 행정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와 복지가 있는 문화행정복지복합타운 건설을 위해 광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정비

나) 주차장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22	주차장	노외 주차장	진교면 진교리 426-12 일원	4,834	감)4,834	-	군고14호 16.02.18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폐지 A = 4,834㎡ → 0㎡ (감 4,8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교면 행정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와 복지가 있는 문화행정복지복합타운 건설을 위해 광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정비

2) 공간시설

가) 광장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광장	문학광장, 소소마당	진교면 진교리 426-41 일원	-	증)24,912	24,912	-	공공청사A. 문화시설A 중복결정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장 신설 A = 0㎡ → 24,912㎡ (증 24,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교면 행정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와 복지가 있는 문화행정복지복합타운 건설을 위해 광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정비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공공청사	행정복합 타운	진교면 진교리 426-41 일원	-	증)24,912	24,912	-	광장A. 문화시설A 중복결정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공공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청사 신설 $A = 0\text{m}^2 \rightarrow 24,912\text{m}^2$ (증 24,912 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교면 행정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와 복지가 있는 문화행정복지복합타운 건설을 위해 광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정비

나) 문화시설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문화시설	복합센터, 도서관	진교면 진교리 426-41 일원	-	증)24,912	24,912	-	광장A. 문화시설A 중복결정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문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시설 신설 $A = 0\text{m}^2 \rightarrow 24,912\text{m}^2$ (증 24,912 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교면 행정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와 복지가 있는 문화행정복지복합타운 건설을 위해 광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정비

다) 청소년수련시설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진교면 진교리 426-5 일원	3,736	감)3,736	-	군고28호 11.06.30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청소년 수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폐지 $A = 3,736\text{m}^2 \rightarrow 0\text{m}^2$ (감 3,736 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교면 행정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와 복지가 있는 문화행정복지복합타운 건설을 위해 광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정비

4) 방재시설

가) 우수지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우수지	우수지	진교면 진교리 425-7 일원	-	증)1,358	1,358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우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지 신설 A = 0m² → 1,358m² (증 1,358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교면 행정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와 복지가 있는 문화행정복지복합타운 건설을 위해 광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정비

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

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대상지역

- 위치 :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일원
- 면적 : 26,270m²

2) 제한사유

- 하동군 진교면 일원에 진교면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편입토지에 대한 부동산가격 안정 및 무질서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3)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허가사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채취,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 화원설치 및 수목식재 등 보상목적의 일체행위

-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 허가할 수 있는 행위
 - 국가 또는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개발행위로서 도시관리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 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제한고시 이전에 개발행위 등이 신청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4)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다. 관계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도면 열람 및 의견 제출장소 : 하동군 도시건축과(☎055-880-2233)

4.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7일간

5. 의견제출 : 하동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는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7일 이내에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수(도시과)에게 서면(우편번호 52333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도시과)이나 전화(055-880-2233), FAX (055-880-223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기타 참고할 사항 등

주민의견 제출서

안건	하동군계획시설(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의견제출자	성명	Tel)
	주소	
주민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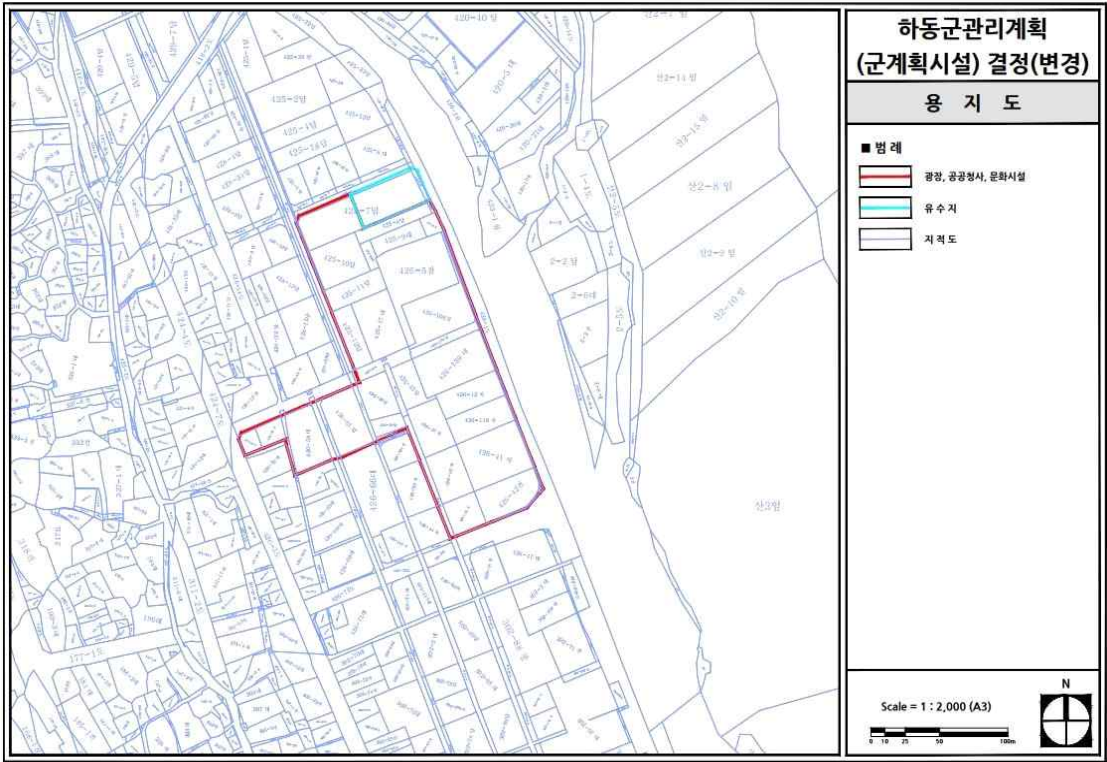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첨부2> -1.공람 사업부지의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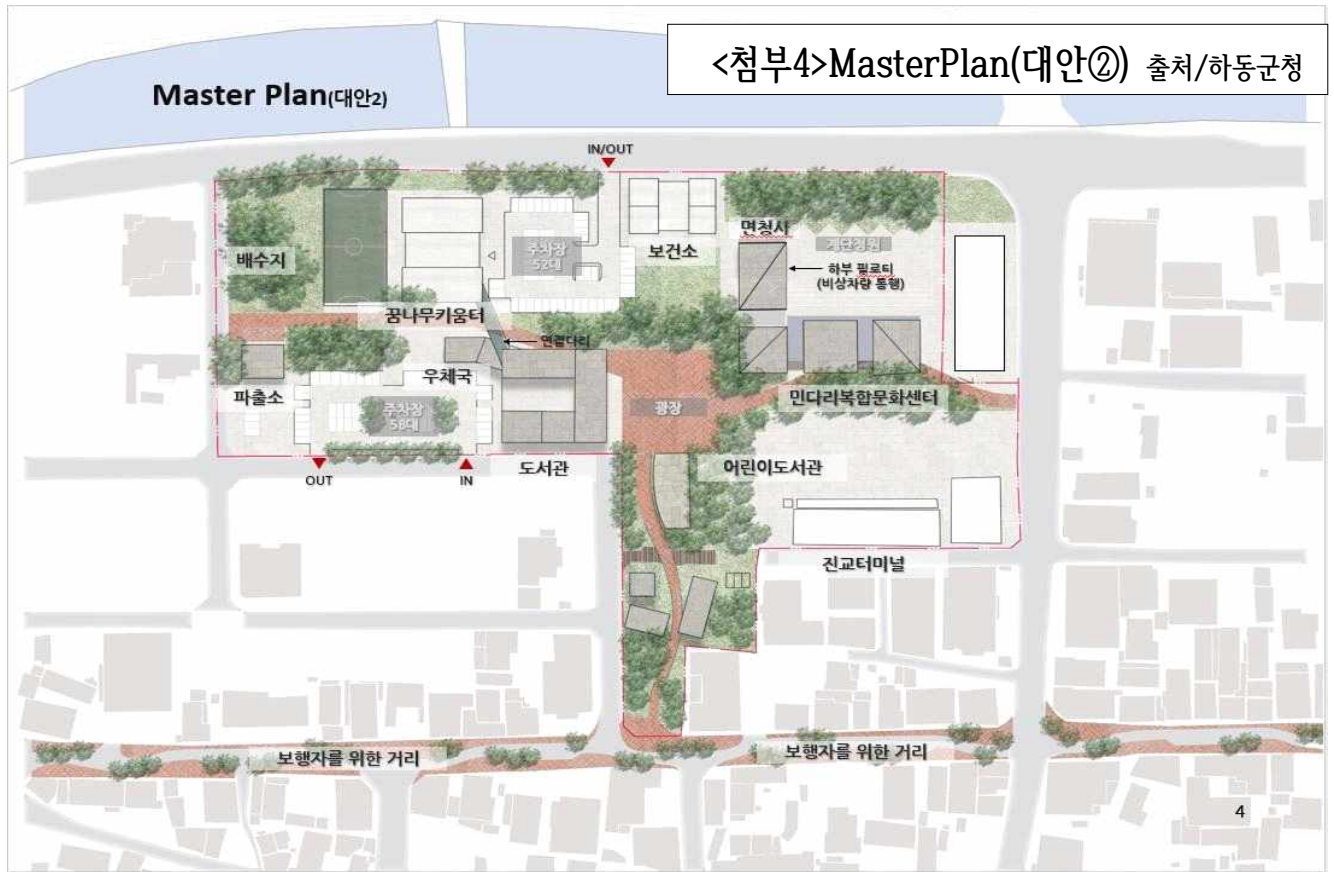
<첨부2> -2.공람도면상 '진교면사무소 부지'의 위치표시



<첨부3>MasterPlan(대안①)출처/하동군청



<첨부4>MasterPlan(대안②) 출처/하동군청



<첨부5>MasterPlan(대안①)의 부분확대도면

MasterPlan(대안①)의 ‘면청사배치’ 부분도(‘現공람도면’과 같은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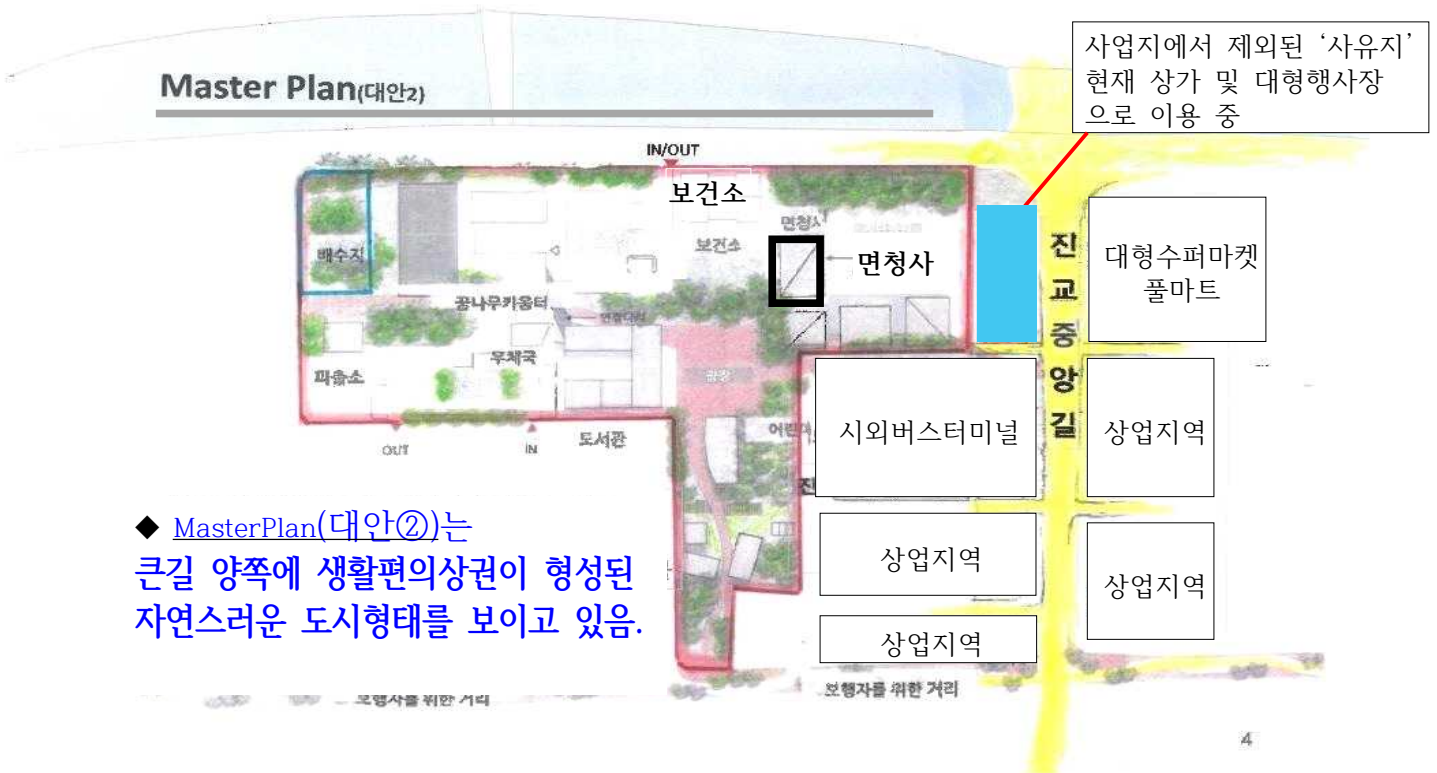


◆ MasterPlan(대안①)은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여, 북쪽으로 돌려앉힌 면청사건물로, 위정자 중심의 전제 근정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독선적인 건축 형태로 사료 됨.

진교중앙길 초입부터 한 구역의 전체대로를 을 몰수한 채, 큰길을 가로막고 있는 건물의 뒷벽은, 기존상권을 단절시키고, 생활편의시설의 자생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민간에 대한 배려가 실종된 형태로 사료 됨.

MasterPlan(대안①)<첨부3>참조

<첨부6>MasterPlan(대안②)의 보충설명표시 도면



◆ MasterPlan(대안②)는 큰길 양쪽에 생활편의상권이 형성된 자연스러운 도시형태를 보이고 있음.

5.10.신문고에 제안

제목

진교면청사 신축부지 위치선정에 주민설문조사 실시 제안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현황1 : 하동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진교시외버스터미널 옆 문화, 행정복합타운 사업의 구역관련 검토과정에서, 지역민이 이용할 면청사 위치를 결정하는데 대다수의 일반적인 민의 파악도 없이 지역민들과는 무관한 일로 추진되고 있음.

■현황2 : 위 사업들의 초반 여러가지 검토안에서는, 사업지의 귀퉁이 대로변에 연결된 사유지는 불포함이었으나 최근 하동군의 입장이 '사유지포함' 쪽으로 변경 검토되고 있음.

이 사유지포함(안)은 공공청사의 후면이 대로변을 길게 막아 북향으로 배치되며, 연결된 사유지의 강제수용과 상권 말소로 인해 편의상권이 필요한 주민들의 생활동선이 길어지는 등 이용자의 편의가 외면될 소지가 높음.

■현황3 : 진교면청사 신축예정 부지는(편의상 임의로 안 번호를 부여함),

- 1안(상평교건너)/부지매입 완료.
- 2안(보건소옆)/사유지 제외.
- 3안(풀마트맞은편)/사유지 포함.

으로 (1,2,3안)이 순차로 나왔으며,

(2안)과(3안)은 전체 사업부지(약 11,200평)에서 2필지의 사유지(약 600여평의 426-42번지와 180평의 426-43번지)의 포함과 제척 조건 외 나머지 배치조건은 동일함.

위(1,2,3안)의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74%가 (2)안을 선호함.

(첨부) 설문조사자료 : 230여명 참여자의 자필로 서명, 마을, 연락처 기재함

— 문제점 —

■문제점1 : 진교면청사 건립사업의 진행과 보고 및 검토에서 실제 시설을 사용할 주민들의 보편적이고 진정한 민의의 수렴이 행해지지 않은 채, 지역실정을 모르는 소수 전문가들의 독선적이고 낡은 탁상이론과 도시의 정형화에 기반한 위험한 개발계획을 가짐.

■문제점2 : 현장여건과 대다수 지역사람들의 뜻을 외면한 채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만 진행됨. 일례로 수용대상토지의 소유 당사자조차도 아예 몰랐던 주민설명회 등이

진행되었음.

■문제점3 : 평균적인 대다수 민의의 수렴 없이 내부에서 정한 대로, 이대로 추진된다면 진교면청사건립 이후, 청사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만은 두고두고 현 군정의 실정으로 회자 될 요인으로 남을 것임.

개선방안

■널리 많은 지역민의 실제의 뜻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군정을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함.

■개선방안으로서, 민의의 파악 방법은, 각 마을 이장단, 노인회, 상인회 등등 군내의 산하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아주 간단한 양식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효과적일 것임.(진교면청사의 신축은 어디가 좋은가? 보건소옆? 풀마트건너편? 등으로) 질문지를 만들어, 하동군청의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평균적 민의를 조사하기 바람.각

■진교면청사건립의 위치선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개인적으로. 진교면청사건립 예정위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조사하면서 설문조사된 자료에 바탕하여 '하동군에 진정서를 내겠다'는 목적을 밝히고, 2023.4월 하순 며칠 동안 진교시장 근처에서 3가지(안)으로, 가장 원하는 건립위치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소소하겠지만 참고자료로 쓰이기 바람. (230여명 참여/보건소앞에 진교면청사가 생기를 원하는 지역민이 대부분으로, 그 비율이 약74%임)

첨부자료 참조

기대효과

■지역사람들의 일반적(74%)인 바람대로 보건소옆자리에 진교면청사가 건립된다면, 사업지 끝자락 코너의 대로변 편의상권이 바로 붙어있게 되므로, 복합시설과 편의상권의 동시이용자들의 동선은 줄고, 오가는 길에 편의상권을 찾아 대로를 건너 민다리 길이나 진교시장 까지 먼거리(500m정도)를 걸지 않고도 바로 옆의 대로변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게 됨.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자연스럽고 편리한 위치에 진교면청사가 건립된다면, 지역민들의 사소한 불편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행정으로서, 그 선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끝>

<첨부8>하동군에 23.5.25. 제출한 민원
(630명의 자필서명목록포함.)

*같은 양식으로 총 630명의 친필서명지입니다. 요청 시에 전체 파일 송부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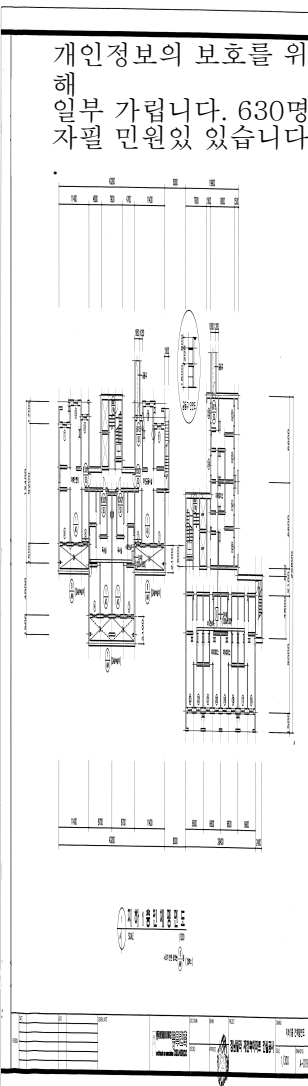
‘진교면사무소’ 자리 선정을 위한 진정서

하동군수님께 건의합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오래토록 우리가 쓸 시설이니, 진교면사무소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장소에 지어주세요.

시외버스터미널 쪽의 **보건소 옆 마당** 에 진교면사무소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편익이 무시된, 플라마트 건너 대로변의 면청사는 절대 반대합니다.

번호	성명	마을	전화번호	비고
1	구경화	장	7-0454	(서명)
2	김순자	진	1866-2264	(서명)
3	박점득	진	53-3707	(서명)
4	이화순	진	001-2082	(서명)
5	장기과	진	592-0935	(서명)
6	정혜은	진	02548	504
7	이근호	진	4558	600
8	이운순	진	3734 3759	(서명)
9	김현민	진	6-0787	(서명)
10	윤미옥	진	5383-2268	(서명)
11	김은정	진	P-1084	(서명)
12	시우순	진	1-0902	(서명)
13	한정호	진	757-2800	(서명)
14	김재홍	진	786 5700	(서명)
15	김복선	진	58 5674	(서명)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가립니다. 630명 자필 민원있 있습니다

<첨부10>수용예정 사유지상 현재의 근린상가 전면과 측면사진

